

이스포츠시설 지정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

[개정시행 2022.07.13.]

제정 2020.02.24.
개정 2022.07.13.

(사)한국e스포츠협회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「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 제4항 및 제17조, 「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4조의2 제1항 및 제9조의2에 따라 이스포츠시설 지정신청의 접수 및 지정기준 충족여부 검토, 지정취소를 위한 사실관계 조사 등에 대한 기준, 절차 및 관리 규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‘이스포츠시설’이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 중 입지조건 및 시설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이스포츠시설 지정 심의위원회(이하 ‘심의위원회’ 또는 ‘위원회’라 한다)에서 심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.
2. ‘이스포츠대회’란 이스포츠시설에서 진행되는 한국e스포츠협회 및 시도 e스포츠협회 주관, 주최대회와 각 시설에서 개최되는 자율 주최대회를 말한다. 세부적인 대회 기준은 이스포츠시설 지정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시행세칙(이하 ‘시행세칙’이라 한다) 제4조를 따른다.
3. ‘업주’란 해당 시설의 실소유주(사업자 등)를 말한다.
4. ‘이스포츠 동호인’이란 이스포츠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이스포츠대회 참여 활동을 하는 회원을 말한다.

제3조 (적용범위) 이 규정은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7호에 따른 ‘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’의 영업소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4조 (심의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이스포츠시설 지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.

1. 이스포츠시설 지정 신청 접수 및 심의
2. 이스포츠시설 지정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(시행세칙 포함) 제정
3. 이스포츠시설의 자격갱신 심의

4. 이스포츠시설의 지정취소를 위한 사실관계 조사

제5조 (심의위원회 구성)

- ① 이스포츠시설 지정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.
-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, 정부·공공기관, 협·단체, 학계, 업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.
- ③ 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호선한다.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위원이 해촉 또는 결위된 경우 신규로 위촉되는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⑤ 위원장 및 위원은 본인 소유 또는 직·간접적인 이해관계의 시설이 심의를 받는 경우, 해당 시설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없다.

제6조 (심의항목) ① 위원회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정을 위하여 이스포츠시설 지정을 신청한 시설에 대해 아래와 같은 심의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지정 여부를 심의한다.

1. 법 제12조에 따라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된 게임물을 원활히 실행할 수 있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보유할 것
2. 이스포츠의 관람, 중계에 필요한 장비 및 좌석 등 이스포츠대회 진행에 용이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을 것
3. 최근 3년간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을 것
4.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장소에 위치할 것

② 심의항목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행세칙 제2조에서 제5조에 의한다.

제7조 (심의신청) ① 이스포츠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(이하 “신청인”이라 한다)는 별지 제1호서식의 ‘이스포츠시설 지정 신청서’ 및 시행세칙 제6조 각호의 서류를 작성·구비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이메일 송부 후 우편 또는 방문하여 원본을 제출한다.

③ 이스포츠시설 지정 신청인은 업주로 한하며, 한 명의 신청인에 대해 한 개의 시설만 이스포츠시설로 지정한다.

제8조 (심의절차) ① 신청기간은 모집일 이후부터 20일간 진행된다.

② 위원장은 신청기간 종료 후, 접수된 신청서류 및 시설 현장조사원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시설별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.위원회를 소집한다.

- ③ 시행세칙 제6조에 따른 기준 점수를 충족한 시설을 이스포츠시설 지정 대상으로 분류 한다.
- ④ 위원회는 신청기간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.

- 제9조 (자격갱신)** ① 이스포츠시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.
- ② 이스포츠시설 자격 갱신을 위해 해당 업주는 지정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시행세칙 별지 제4호에 따른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갱신심의 결과 일정 기준 이상을 유지하지 못한 시설은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된다.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행세칙 제2조에서 제6조에 따른다.
 - ④ 갱신심의 관련 서류를 제2항에 따른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시설은 자격이 취소된다.
 - ⑤ 위원회는 지정기간 만료일 60일 이내에 갱신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.

제10조 (지정취소) 위원회는 이스포츠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취소를 위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, 그 결과를 즉시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.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이스포츠법 등에 따른 이스포츠시설의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

제11조 (혜택) 이스포츠 시설에는 아래와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.

- 1. 이스포츠 시설 홍보
- 2. 이스포츠 아마추어 대회 개최
- 3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12조 (의무) 이스포츠시설은 아래와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.

- 1. 이스포츠시설 지정 요건 유지
- 2. 이스포츠시설 및 개최 대회에 대한 홍보
- 2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13조 (금지사항) 이스포츠시설 및 업주에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금지된다.

- 1. 이스포츠시설에 대한 무단 자격 양도
- 2. 이스포츠시설 관련 내부 정보의 외부공개
- 3. 이스포츠시설 로고(BI)의 무단사용

- 4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.

이스포츠시설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발급일·열람일	처리기간	30일
------	------	---------	------	-----

신청인	시설명	사업자등록번호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
	대표자 주소	전화번호

영업소 소재지

「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이스포츠시설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 (기타양식)	1. 컴퓨터와 키보드 및 마우스 등 주변기기 보유 현황 1부. 2. 이스포츠 관람 및 중계 등을 위한 장비 보유 현황 1부. 3. 최근 3년간 이스포츠대회 개최 실적 1부.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: 문화체육관광부

제 호

이스포츠시설 지정서

- 시설의 명칭:
- 사업자등록번호:
- 대표자 성명:
- 영업소 소재지:

「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이스포츠시설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